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 판매·사용중지 명령 보고(알림)[(주)우영메디칼]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

나.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

2. 위 호 관련, 우리 청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우영메디칼의 수동식의약품주입펌프 (제인99-15호, Disposable Silicone Balloon Infuser Accufuser Plus P1015M)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사용중지를 명령하였음을 보고(알림)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등 명령과 관련하여 각 시·도 및 협회에서는 유관 기관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사용중지 명령 대상>

품목명 (허가번호,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연월)	비고
수동식의약품주입펌프 (제인99-15호, Disposable Silicone Balloon Infuser Accufuser Plus P1015M)	PBHL139 (2017.12.12.)	- 사유 : 이물 신고 - 제품정보 : '불임'

끝.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료기기관리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료기기안전관리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첨단의료기기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심혈관기기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정형재활기기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구강소화기기과장), 운영지원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실사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의료제품실사과장,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사)대한치과기재협회, (사)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대한병원협회 귀하, 대한의사협회 귀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장,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장), 부산광역시(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보건건강과장), 인천광역시(보건정책과장), 광주광역시(건강정책과장), 대전광역시(보건정책과장), 울산광역시(식의약안전과장), 경기도지사(보건정책과장), 강원도지사(식품의약과장), 충청북도지사(식의약안전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기기안전관리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주무관 우대곤 주무관 김현숙 의료제품안전 전결 2018. 4. 5.
과장 송현수

협조자

시행 의료제품안전과-4019 (2018. 4. 5.) 접수

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의료제품안전과 (둔산동) / <http://www.mfds.go.kr>

전화번호 042-480-8763 팩스번호 042-480-8770 / dragon1180@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붙임> 사용중지 대상제품(사진)

제품정보

- **제품명(모델명):**
수동 식의약품주입 펌프(Disposable
Silicone Balloon Infuser Accufuser Plus
P1015M)
- **허가번호:**
제인99-15호
- **제조업체(소재지):**
(주)우영메디칼(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신2길 98)
- **제조일자:** 2017.12.12
- **제조번호:** PBHL139

